

■ 실무논단

전자어음 관련 제도 개선방안 검토

최 재 영
금융결제원 어음교환부

〈目 次〉

I. 머리말	2. 해결 방안(私見) : 전자어음법 및 대법원 민사집행규칙 개정
II. 전자어음 공증 관련 개선방안 검토	
1. 현황	IV. 부도사유 사고신고서접수 관련 개선 방안
2. 해결 방안(私見) : 전자어음 서면 전환 절차 신설	1. 개요 및 문제점 2. 전자어음 사고신고등록시스템 구축(안)
III.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 관련 개선방안 검토	V. 결 론
1. 현황	

I. 머리말

2004년 3월 22일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어음법’이라 한다)이 제정되고, 2005년 1월 1일부터 동 법이 시행됨에 따라 실품약속어음의 전자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2005년 1월 1일 금융결제원이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전자어음관리기관(금융결제원)과 시중은행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2005년 9월 27일 전자어음 시스템이 구현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법무부와 전자어음관리기관(금융결제원) 및 시중은행 등 관련기관들은 긴밀한 협조 하에 전자어음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을 정비·개선해왔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자어음법 제정 당시부터

2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68호 (2014.10.)

2009년까지는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유통¹⁾’하는 과정을 구현시키고 안정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후 2009년 5월에 전자어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어음법을 개정하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약속어음 발행시 전자어음 사용을 의무화²⁾’하였다. 2013년에는 전자어음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던 ‘전자어음 분할배서 제도³⁾⁴⁾’를 도입하고, 전자어음 의무사용 대상을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인 법인⁵⁾’으로 확대하면서 전자어음 활성화 관련 현안을 모두 입법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결론적으로 2014년 현재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유통’시킴과 동시에 ‘전자어음을 활성화⁶⁾’한다는 목적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고 본다.

-
- 1) 전자어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2009년 개정 전자어음법 중 관련 내용
 - 전자어음법 제6조의 2(전자어음의 이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 3) 전자어음법상 분할배서 제도는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최초로 배서한 자(최초 수취인)가 발행금액 범위 내에서 4회까지 전자어음을 분할하여 배서양도」 하는 제도를 말한다. 분할배서 제도 도입 취지는 최초수취인이 지급받은 어음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어음할인 등에 소요되는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결제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 4) 전자어음법 제7조의 2 (전자어음의 분할배서)
 - ① 어음법 제1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최초로 배서하는 자에 한하여 총 5회 미만으로 어음금을 분할하여 그 일부에 관하여 각각 배서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된 각각의 전자어음은 제7조에 따른 배서의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 5) 2013년 개정 전자어음법 중 관련 내용
 - 전자어음법 제6조의 2(전자어음의 이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 전자어음법 시행령 제8조의 2(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법 제6조의 2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 6) 우리나라 전자어음과 유사한 사례로는 대만 전자수표 운영사례를 들 수 있다. 대만은 2003년 9월 26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를 보다 원활히 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강화하며 다양한 비즈니스 거래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자수표 제도를 도입·시행하였었다. 대만의 전자수표(eCheck)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전자서명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어음·수표로서 전자환어음, 전자약속어음 및 전자수표를 포괄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자수표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2011년 12월 잠정 중단되었다. 대만어음교환소 방문 확인 결과 잠정 중단 사유로는 ①다양한 결제수단의 존재로 인해 전자수표에 대한 고객 니즈가 발생하지 않았고, ②이용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적 능력이 요구되었으며, ③참가은행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감안하면 전자어음법 개정을 통해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전자어음 활성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연도별 전자어음 회원등록 현황]

(단위 : 명)

구분	발행인	수취인	합 계
2005	56	768	824
2006	147	4,690	4,837
2007	264	14,500	14,764
2008	383	24,045	24,428
2009	5,157	117,148	122,305
2010	6,532	214,511	221,043
2011	7,874	274,501	282,375
2012	9,025	322,479	331,504
2013	9,722	359,879	369,601
2014(9월말기준)	18,915	405,961	424,876

[연도별 전자어음 이용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발행		배서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5	252	85	62	30	314	115
2006	8,351	5,082	3,727	1,773	12,078	6,855
2007	31,749	24,493	14,334	9,768	46,083	34,261
2008	44,349	45,676	20,629	20,453	64,978	66,129
2009	237,621	135,684	117,725	66,685	355,346	202,369
2010	1,365,837	983,290	1,122,994	455,798	2,488,831	1,439,088
2011	1,462,048	1,227,189	1,275,296	532,235	2,737,344	1,759,424
2012	1,493,602	1,322,439	1,301,722	530,048	2,795,324	1,852,487
2013	1,481,138	3,011,389	1,268,893	492,778	2,750,031	3,504,167
2014 (9월말기준)	1,371,117	3,151,346	1,271,021	431,655	2,642,138	3,583,001

전자어음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용고객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전자어음과 관련하여 최소한 실물약속어음과 동일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전자어음 이용고객이 증가하고 유통건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이용고객의 어음상 권리 행사’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전자어음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실물약속어음과 관련하여 타 법령에 근거한 제반 제도들과 전자어음의 특성이 상충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실물약속어음에 가능한 공증이 전자어음에 대해서는 불가능하고,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에 대한 세부 절차가 없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한다는 점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나아가 전자어음 사고신고서접수 부도와 관련한 후속 조치 신설 필요성도 이용고객들이 자주 제기하는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전자어음법과 전자어음 관련 제반 법·제도들이 상호 조화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전자어음 이용자의 원활한 권리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전자어음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하에서는 앞서 언급한 제반 문제점들 - 전자어음 공증,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 및 전자어음 사고신고서접수 부도 개선 방안 - 을 중심으로 현황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II. 전자어음 공증 관련 개선방안 검토

1. 현황

가. 공증제도 개요

공증이란 넓은 의미로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공증인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작성한 계약 그 밖의 법률행위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 등에 대하여 공적 증명력을 갖게 하는 것’을 의미⁷⁾한다. 우리나라 공증인법 관련 규정⁸⁾에 의하면 공증인의 사무는 크게 ①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②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 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에 대한 인증, ③공증인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로 크게 분류⁹⁾할 수 있다. 공증인의 사무 중 공정증서의 작성은 세부적으로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7) 박길현, 공증제도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강릉원주대학교 박사논문, p8 참조

8) 공증인법 제2조(공증인의 직무) 참조

9) 구체적 사례로는 당사자가 작성한 사서증서에 공증인이 일자인(日字印)을 찍어 그 시점에 문서가 존재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정일자 부여(민법 부칙 제3조) 등이 있다. : 전병서, 전자공증제도의 현황과 과제, 민사소송(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제17권 제2호(2013년 11월), p568 참조

목적으로 하는 각종 계약 등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과 어음·수표 공정증서 작성(공증인법 제56조의 2¹⁰⁾ 등으로 나누어진다.

‘어음·수표 공정증서’란 어음·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말한다. 어음·수표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어음·수표상의 채무자가 어음·수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어음·수표 채권자는 소제기·지급명령 또는 중재절차 신청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¹¹⁾

나. 공증제도와 전자어음

전자어음법 제2조 제2호는 ‘전자어음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라고 하고, 동법 제4조는 ‘전자어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어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어음은 실물약속어음을 전자화한 것’이라는 점과 ‘전자어음법과 어음법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실물약속어음에 적용 가능한 제도는 전자어음에도 적용 가능해야 한다.¹²⁾ 하지만 현재 실물약속어음에 적용되는 공정증서 제도는 전자어음에 대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주요 원인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공증인법에 전자어음 공정증서 작성 관련 근거규정이 없다는

10) 공증인법 제56조의 2(어음·수표의 공증 등) ①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認諾)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서는 어음·수표의 발행인과 수취인,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을 때에만 작성할 수 있다.

③ 공증인이 제1항에 따른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 배서인(背書人)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公證引受)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執行文)은 공증된 어음·수표의 수취인이나 공증배서(公證背書)된 양수인에게만 부여한다.

⑥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 2,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3조의 2를 준용한다.

11) 공증실무, 대한공증인협회, 2013, p84 참조

12) 이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로는 아래를 들 수 있다.

‘전자어음법에 규정이 없다고 하여 실체가 없는 전자어음에 유체물인 약속어음을 전제로 하여 성립된 어음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정치한 연구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어음법은 어음행위의 복잡성에 비하여 관련 규정이 적기 때문에 그동안 어음상 법률관계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수많은 해석론이 등장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실물어음과는 완전히 다른 가상공간상의 전자어음에 대하여 현재의 어음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작업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 김문재, 어음·수표법[이론과 실무], 동방문화사, 2013, p553-554 참조

점이다. 전자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은 전자공증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2009년 공증인법을 개정하면서 전자공증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그 적용대상은 공증인법 제2조 제2호에만 한정¹³⁾되었다. 따라서 공증인법 제2조 제1호 및 제56조의 2에 근거를 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한 전자공증제도 적용은 실물약속어음이든 전자어음이든 불가능하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2009년 공증인법 개정시 공정증서의 전자화(전자공정증서)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①전자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의 의사확인이 쉽지 않고, ②민사집행절차가 전자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적으며, ③전자공정증서에 대해서는 그 수요가 적다는 점 등¹⁴⁾을 들고 있다.

둘째, 일반적인 어음·수표 공정증서 제도 역시 현재는 전자어음에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전자어음 제도와 어음·수표 공정증서 작성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공증인법 제56조의 2 제3항이 상호 모순되기 때문이다. 동 조항에 따르면 공증인은 어음·수표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해 ①어음·수표의 원본을 붙여 공정증서의 정본을 작성하여 어음·수표상의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②어음·수표의 사본을 붙여 공정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하여 원본은 공증인이 보관하고, 등본은 채무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증서가 작성된 어음·수표도 지시증권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고 배서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기 때문에, 즉 유통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본을 채권자에게 교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전자어음은 ①원본과 사본을 구분할 수 없으며 ②원본과 별개의 사본을 만들 수도 없고, ③전자어음의 원본을 공증인에게 제출할 수도 없다. 전자어음 운영방식이 - 전자어음법 해석상 논란의 여지¹⁵⁾는 있지만 - 전자문서방식이 아니라 전자등록방식으로 운영¹⁶⁾되고 있기 때문이다.

13) 전자공증제도 자체가 전자공정증서 제도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공증제도 세부 내용은 고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생략한다.

14) 전병서, 전게서, p569 참조

15) 전자어음법에 대해 전자등록방식설, 전자문서방식설, 혼합설이 대립되고 있다. 먼저 전자등록방식설은 전자어음 발행에서부터 지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자어음관리기관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어음법은 전자등록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자문서방식설은 전자어음을 전자어음 관리기관에 등록하라고 하는 것은 전자어음거래를 전자어음 관리기관의 관리하에 두려는 취지에 불과하고 전자어음 방식을 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전자어음법이 발행인으로 하여금 요식화된 전자어음을 작성하여 수취인에게 전자어음 자체를 송신하도록 하고, 배서의 경우에도 이 전자어음 자체를 피배서인에게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전자문서방식으로 보고 있다. 혼합설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의 발행과 결제에 개입하지만 유통은 전자어음을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전자어음관리기관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 방식이 혼합된 것으로 보고 있다. : 김문재, 전게서, p557-558에서 인용

16) 현재 전자어음 운영방식을 전자등록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전자문서방식은 사본과 구별될 수 있는 원본 또는 정본이 유통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전제로 하지만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이러한 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근거한다. 보안 및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전자문서방식의 전자결제제도도 도입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同旨, 김문재, 전게서 p558 참조

2. 해결 방안(私見) : 전자어음 서면 전환 절차 신설

전자어음법은 약속어음의 전자화란 대명제하에 제정되었고 이러한 명제는 지금까지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약속어음의 전자화란 대명제를 견지할 경우 실물약속어음을 전제로 한 기타 다른 법제도와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매우 크다. 이러한 전자어음법과 타 법제도와와의 충돌 - 대표적인 경우가 전자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이다 - 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전자화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전자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위해 전자어음법을 개정¹⁷⁾하여 「전자어음의 서면 전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우리나라 입법례

전자증권의 서면 전환에 대한 우리나라 입법례로는 크게 2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는 증명서 발급 방식으로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단기사채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전자단기사채 제도에 적용되고 있다. 두 번째는 완전한 서면증권 전환방식으로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전자선하증권 제도에서 채택하고 있다.

(1) 증명서 발급 방식 : 전자단기사채법상 채권자증명서

전자단기사채제도란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단기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채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을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처리하는 제도¹⁸⁾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전자단기사채의 양도는 계좌간 대체등록¹⁹⁾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계좌간 대체등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즉 채권자가 발행자에 대하여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입증하여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²⁰⁾를 대비하여

17) 이와 관련하여 전자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공증인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전자어음의 원본과 사본에 관한 문제는 공증인법의 개정을 통해서도 해결하기 어렵다. 私見으로는 전자어음법만을 개정하여 ‘전자어음의 서면증권화’를 인정한다면 공증인법의 대폭 개정 없이도 현행 절차에 따라 전자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에 공증인법 개정 관련 세부 검토를 생략한다.

18) www.ksd.or.kr

19) 전자단기사채법 제9조(계좌간 대체등록) ① 전자단기사채 등의 양도 등을 위하여 계좌간 대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전자단기사채 등이 등록된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계좌간 대체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0)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전자단기사채 발행자의 합병 등으로 발행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발행한 경우 합병 등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한 이의제기만 허용하고 있음에 반해, 전자단기사채의 경우에는 상법상 사채권자집회

전자단기사채법은 채권자증명서 제도를 명시²¹⁾하고 있다.

채권자증명서의 특징은 ①채권자증명서를 발행인 등에게 제출한 경우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처분은 제한되며, ②등록기관은 채권자에게 채권자증명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전자단기사채의 처분을 제한해야 하고, 채권자증명서가 반환되었을 경우에는 그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전자선하증권의 서면선하증권 전환 제도

전자선하증권 제도는 운송인이 선하증권을 서면으로 발행하는 대신에, 법무부가 지정하는 등록기관(KTNET)에 전자선하증권을 등록하는 방식, 즉 선하증권을 전자문서로 유통하는 제도를 말한다²²⁾.

전자선하증권의 양도도 원칙적으로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전자선하증권의 양도는 권리자가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전자선하증권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양도등록을 신청하고, 등록기관이 등록부상에 양도등록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전자선하증권의 특성상 국제무역과 연관될 수도 있는데 전자선하증권 발행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국가와 교역 또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권리자는 등록기관을 통하여 전자선하증권을 서면선하증권으로 전환²³⁾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관련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채권자에 의한 이의제기가 필요하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 허항진, 전자단기사채제도의 이해 : 단기금융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학술정보, 2011, p137 참조

21) 관련 법규정 : 전자단기사채법 제16조(채권자증명서)

- ①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채권자가 자신의 지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전자단기사채 등의 등록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채권자증명서'라 한다)의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 ②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채권자증명서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발행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발행인 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채권자증명서를 발행한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그 채권자증명서 발행의 기초가 된 전자단기사채 등의 처분을 제한하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증명서가 반환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제한하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④채권자가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채권자증명서를 발행인 등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발행인 등에 대하여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2) www.eblkorea.or.kr 참고로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은 전자선하증권의 발행등록·양도·변경·인도청구·서면선하증권으로의 전환 및 관련 전자기록 보존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23) 관련 법규정 :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2조(서면선하증권으로의 전환)

- ① 등록기관은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로부터 전자선하증권을 서면선하증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에게 서면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재현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법 제853조 제1항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본다.

서면선하증권 전환제도의 특징으로는 먼저 권리증명서가 아닌 완전한 서면선하증권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서면선하증권으로 전환한 경우 전자선하증권의 법적 효력은 상실되며 전자적인 업무처리는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서면으로 전환된 전자선하증권은 상법에서 규정하는 선하증권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전자선하증권으로의 재전환은 불가능하게 된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서면전환을 위해 전자선하증권의 소유권자가 등록기관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²⁴⁾는 점을 들 수 있다.

나. 전자어음 서면전환 방식

전자단기사채 및 전자선하증권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양 제도는 관련 법제도와는 충돌 또는 현실적 사정 등을 감안하여 서면전환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전자어음도 동일하게 서면전환 절차를 신설하여 전자어음 공정증서 작성 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서면전환 형태와 구성원칙이다.

(1) 서면전환 형태

서면전환 형태와 관련하여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서면전환 전자어음의 지급제시 방법이다. 전자어음의 지급제시는 어음법 및 전자어음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전자어음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전자어음법 제9조 제1항 단서²⁵⁾에 따른 ‘전자어음 자동지급제시’이다. 동 규정에 근거하여 전자어음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은 전자어음 만기일 02:00에 당일이 만기인 전자어음을 정보처리 조직을 통해 일괄 자동지급제시하고 있다.

완전한 실물어음으로 전환된 전자어음, 즉 전자선하증권 전환 방식에 따라 전환된 전자어음에 대해서는 자동지급제시를 할 수 없다. 완전 서면전환된 전자어음의 배서양도는 해당 실물 서면의 뒷면에 배서의 방식으로 수행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방식에 의할 경우 전자어음관리기관은

-
- ② 등록기관은 제1항의 서면선하증권의 뒷면에 전자선하증권의 양도에 관한 기록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서면선하증권의 뒷면에 기재된 양도에 관한 기록은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④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서면선하증권을 교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부에 서면선하증권으로의 전환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전자선하증권의 전자등록부를 폐쇄하고 그 사실을 운송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전환·교부된 서면선하증권의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등록기관이 그 정확성을 담보한 것으로 본다.
- 24) 전자선하증권의 서면선하증권 전환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서면선하증권 전환 신청서, 수령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한국무역정보통신을 직접 방문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무역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는 수령인의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서면선하증권의 원본을 교부한다.
- 25) 전자어음법 제9조 (지급제시) 제1항 단서
 다만,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전자어음의 제시는 지급을 위한 제시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전자어음의 만기일 이전에 자동으로 지급제시되도록 할 수 있다.

전자어음 최종소지인의 인적정보와 지급계좌, 거래은행 등 자동지급제시에 필요한 세부정보를 전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지급제시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서면전환된 전자어음을 다시 전자화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고 부수적인 문제점을 발생²⁶⁾시키기 때문에 서면발행 후 다시 전자화하여 자동지급제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완전 서면전환된 전자어음을 실물약속어음 교환방식으로 지급제시하는 방안도 실효성은 없다. 2010년 11월부터 실물약속어음의 지급제시 방식이 실물교환이 아니라 이미지 정보교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실물약속어음은 이미지 정보교환을 위해 ①관련 정보의 MICR인자가 필요하며, ②이미지 교환을 위해 정해진 형식 표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교환이 가능하지만 실물전환 전자어음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건이 적용가능한지 의문이다. 더욱 큰 문제점은 실물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변조 사고이다. 현재의 정형화되고 전자화된 전자어음에 대해서는 위변조가 발생할 여지가 없지만 실물로 전환하고 해당 실물전자어음을 자유롭게 유통시킬 경우 위변조 문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전자어음에 대한 신뢰성 문제와 직결된다.

증명서 방식(전자단기사채 방식)에 의할 경우 지급제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증명서 방식에 따라 전자어음 전환을 인정하되, ①제한된 목적범위 내에서는 증명서가 전자어음을 대신하지만 증명서를 통해 전자어음을 배서·양도할 수 없으며, ②증명서 발급 시점에 전자어음관리기관은 해당 전자어음의 배서·양도를 금지하고, ③증명서를 반환하거나 반환에 갈음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제출한 시점에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배서·양도를 허용하되, ④만기일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증명서 발급시점의 전자어음 발행인 및 소지인 정보를 기준으로 지급제시한다는 근거규정을 전자어음법에 반영한다면 자동지급제시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따라서 전자어음 서면전환은 증명서 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운영 원칙 등

전자어음의 서면전환(증명서)은 타 법령 또는 제도와 의 상충관계를 해소하고 전자어음 제도를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전자어음 서면전환(증명서)을 인정할 경우에도 아래의 원칙이 전자어음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첫째, 전자어음 서면전환(증명서)은 전자어음법을 포함한 법령 또는 법원의 판결·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둘째, 서면 전환된 증명서는 허용된 목적범위 내에서만 전자어음을 대체하여 권리행사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다만, 서면전환된 증명서를 통한 전자어음 배서·양도 등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26) 부수적인 문제점으로는 먼저 배서양도를 위해 전환된 전자어음 뒷면에 행한 기명날인을 어떻게 전자화할 것인지, 전자화된 기명날인에 전자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지 등이다. 나아가 서면전환된 전자어음 뒷면에 행한 배서와 다시 전자화된 이후의 배서의 연속성 문제, 배서 위조 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다.

세제, 서면전환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반드시 전자어음관리기관을 방문해서 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서면전환 전에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용도 등을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한다.

네제,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서면전환과 관련한 제반 사실 - 증명서 교부일자, 증명서 반환 등의 일자, 증명서 교부목적 등 - 및 증명서를 통한 권리행사 내용 등을 기록 관리한다.

동 원칙에 따른 전자어음 서면전환(증명서)을 최종적으로 정의하면 「전자어음의 발행인 또는 소지인 등 관련인이 ①법령·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에 근거하여 ②제한된 목적범위 내(배서·양도 등 처분행위 불가)에서 전자어음 권리를 증명 또는 행사하기 위해 ③전자어음관리기관에 전자어음 서면(권리증명서)전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④전자어음관리기관은 인적사항 및 용도 등을 확인 후 요청자에게 서면(권리증명서)를 발행하되 해당 전자어음의 배서·양도 등 처분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 전자어음 공정증서 작성 절차

전자어음 서면전환(증명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전자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이 운영될 것이다.

(1) 전자어음관리기관 방문

공정증서 작성을 희망하는 전자어음 이용자는 인적사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지참하여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방문한다.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인적사항 확인 및 증명서 교부의 적법성 등을 확인 후 교부 내용 등을 기록하고 증명서를 발급한다.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발급과 동시에 해당 전자어음의 배서·양도를 금지시킨다.

(2) 공증인 방문

신청자는 관할지역 공증인을 방문하여 공증인법에 따라 전자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신청서가 전자어음을 대체하기에 공증인은 신청서를 전자어음에 갈음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자는 전자어음관리기관 제출을 위해 공정증서 등본 등 공정증서 작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3) 전자어음관리기관에 관련 서류 제출

신청자는 공정증서 작성 후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어음관리기관은 관련 서류 확인 후 공정증서 작성 사실을 전자어음 원장에 등전자어음 배서·양도 제한을 해제한다. 참고로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 지급제시일까지 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증명서 발급 당시의 전자어음 발행인과 소지인을 기준으로 자동지급제시한다.

Ⅲ.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 관련 개선방안 검토

1. 현황

가. 어음에 대한 강제집행 현황

민사집행법은 약속어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동 규정에 따라 실물약속어음에 대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압류

민사집행법은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유가증권」과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으로 구분한 후 전자는 유체동산 집행방법²⁷⁾으로 후자는 채권집행방법²⁸⁾으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유가증권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유가증권은 유체동산집행의 절차에 따른다. 특이한 것은 민사집행법상 집행관이 압류한 물건을 채무자에게 보관(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단서)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일반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직접 보관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²⁹⁾가 있다.

27) 민사집행법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②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③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8) 민사집행법 제233조(지시채권의 압류) 어음·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 한다.

한편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유가증권의 경우 민사집행법은 집행관에게 어음 등의 제시의무를 명시(민사집행법 제212조)하고 있다³⁰⁾.

전자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지시금지'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배서가 금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상의 전자어음은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

지시증권 중에서 배서가 금지된 것은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방식과 효력으로써만 양도³¹⁾할 수 있다. 따라서 배서가 금지된 지시증권은 원칙적으로 유통성이 없기 때문에 증권 자체가 아닌 증권이 표창하는 채권을 집행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채권의 행사에는 증권의 소지가 요구되기 때문에 압류에 집행관의 증권 점유가 필요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한 압류는 압류명령의 송달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집행관이 해당 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집행관의 증권점유는 압류의 효력발생요건³²⁾이다. 대법원도 동일한 입장³³⁾이다.

한편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증권의 점유를 취득한 집행관은 채권자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그 인도를 요구할 때까지 스스로 보관하면서 보관중에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을 경우에는 지급제시나 거절증서의 작성 등 권리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지급제시를 하여 채무자가 지급하는 어음금 등을 수령할 수 있다³⁴⁾.

전자어음 발행인이 전자어음을 발행하면서 '지시금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어음관리기관은 해당 전자어음 배서를 시스템으로 금지시키고 있다. 따라서 발행인이 '지시금지'를 선택한 전자어음은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이 실시되어야 한다.

29) 오상현, 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 저스티스 제97호, p98 참조

30) 민사집행법 제212조(어음 등의 제시의무) ① 집행관은 어음·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이하 '어음 등'이라 한다)으로서 일정한 기간 안에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한 제시 또는 지급의 청구를 필요로 하는 것을 압류하였을 경우에 그 기간이 개시되면 채무자에 갈음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미완성 어음 등을 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어음 등에 적을 사항을 보충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31) 어음법 제11조(당연한 지시증권성) ② 발행인이 환어음에 '지시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32) 오상현, 전계논문, p102 참조

33) 어음의 가압류나 압류는 민사소송법 제707조, 제566조(현 제233조)에 의하여 가압류명령이나 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외에 집행관이 그 어음증권을 점유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대법원 1976. 3. 23 76다198

34) 오상현, 전계논문, p103 참조

(2) 가압류

민사집행법 제291조에 따라 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역시 ①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유체동산 집행방법으로, ②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 집행방법에 따라야 한다. 집행관의 점유 취득과 지급제시 등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가처분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약식 절차를 의미한다. 약속어음에 있어서 해당 어음이 분실, 도난 또는 사취당하였거나 원인관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 해당 어음의 발행인 또는 정당한 소지인은 해당 어음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하지만 약속어음은 유통성이 강하여 언제든지 제3자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의 권한없는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 등의 반환 청구를 구하는 본안소송에 앞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처분이 필요³⁵⁾하다. 따라서 약속어음에 대한 가처분은 집행관에게 해당 약속어음을 보관시켜 이전을 금지시키고 약속어음에 관한 권리행사, 즉 처분을 금지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³⁶⁾으로 하고 있다.

나. 강제집행과 전자어음

약속어음에 대해 적용되는 강제집행 관련 법률규정들은 당연히 전자어음에도 적용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률에 근거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점유이전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주된 이유는 ①강제집행 제도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집행관에 대한 점유이전'은 현재 전자어음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점, ②집행관에 대한 점유이전을 전제로 한 집행관의 지급제시 등 권리보전행위가 실질적으로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서 자동지급제시 등을 통해 수행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35) 약속어음 발행인의 어음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약속어음의 배서양도 점유이전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여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약속어음은 일정한 권리행사기간이 있어 그 기간이 도과하면 본래의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과 지급제시 등 소구권 보전을 위한 조치는 위 가처분에서 금지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2. 6. 25, 2002다13720

36) 약속어음에 대한 가처분 결정문 예시는 아래와 같다.

① 피신청인 甲(어음소지인)은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거나 배서양도 및 추심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 약속어음에 대한 피신청인 甲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③ 집행관은 위 약속어음의 권리보전행위를 할 수 있다.
④ 피신청인 乙(지급은행)은 위 약속어음에 기하여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해결 방안(私見) : 전자어음법 및 대법원 민사집행규칙 개정

전자어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강제집행 절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행관에 대한 점유이전’ 및 ‘권리보전 행위의 주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집행관에 대한 점유이전’은 앞서 언급한 전자어음의 서면전환(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전체 집행관을 전자어음 시스템에 등록하고 압류·가압류·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특정 집행관 앞 점유 이전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동 방식들로는 ‘권리보전 행위의 주체’라는 문제, 즉 지급제시의 주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은 전자어음법 및 대법원 민사집행규칙을 개정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가. 우리나라 입법례

전자단기사채법 제34조는 ‘전자단기사채 등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 경매 또는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례는 자본시장법 제317조³⁷⁾에서 ‘예탁증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 또는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현재 대법원 민사집행규칙은 예탁유가증권 압류에 대해서는 제176조에서부터 제182조³⁸⁾까지,

37) 예탁유가증권에 대해 강제집행의 특례를 인정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증권대체결제제도라 함은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그 소유의 유가증권을 먼저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증권회사는 다시 이것을 모아서(증권회사 자신의 유가증권도 포함하여) 공통의 중앙기관, 즉 대체결제회사에 재예탁하는 동시에, 유가증권의 소유자는 증권회사에, 증권회사는 대체결제회사에 각각 계좌를 개설하고 나서 유가증권의 양도나 담보권의 설정은 유가증권을 현실로 주고 받지 않고 양도인 또는 담보권 설정자의 계좌로부터 양수인 또는 담보권자의 계좌로 일정한 수량을 대체함으로써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 생략 --- 고객과 예탁자는 각 계좌부에 기재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수량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예탁유가증권의 양도는 각 증권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것이 되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도 예탁된 증권에 공유지분, 즉 예탁원에 혼장(混藏)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대상으로 하여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채권집행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 : 오상현, 전제논문, p105-106에서 인용

38) 예탁유가증권의 압류에 관한 대법원 민사집행규칙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76조(예탁유가증권집행의 개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다음부터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유가증권(같은 법 제3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집행’이라 한다)은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

- 제177조(압류명령)

법원이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하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계좌대체청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2조 제2항에 따른 증권반환청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채무자가 같은 법 제309조제2항에 따른 예탁자(다음부터 ‘예탁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채무자가 고객인 경우에는 예탁자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증권 반환을 금지하여야 한다.

가압류에 대해서는 제214조³⁹⁾에서, 가처분에 대해서는 제217조⁴⁰⁾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⁴¹⁾.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대법원 민사집행규칙 중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은 법원이 강제집행 결정을 할 때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증권회사·은행 등)에 대해 예탁유가증권의 양도수단인 계좌대체와 증권반환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점(규칙 제177조, 제214조 제1항, 제217조)을 들 수 있다.

나. 전자어음 강제집행 관련 검토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대법원 민사집행규칙 해당 조문의 취지와 절차를 전자어음에 적용한다면 ①법원은 전자어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처분 결정시 전자어음관리기관에게 해당 전자어음의 배서·양도를 금지시켜야 하며, ②전자어음관리기관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전자어음에 대해 배서·양도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자어음의 배서·양도는 불가능하게 되므로 실물약속어음에서와 같은 집행관에 대한 점유이전은 불필요하게 된다.

문제는 보존행위의 주체에 관한 문제이다. 私見이지만 법규정 개정을 통해 전자어음관리기관의 배서·양도 금지 근거가 마련되면 보존행위의 주체도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실물약속어음의 보존행위는 크게 ①지급제시, ②어음요건이 흠결된 미완성 어음에 대해 채무자에 보충을 최고하거나, ③공시최고 중인 유가증권에 대해 필요한 신고 및 제출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전자어음 경우 어음요건이 흠결된 미완성 어음이 발행될 수 없고 백지어음이 전자어음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공시최고의 요건인 분실·도난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자어음의 보존행위로는 지급제시만이 의미가 있을 뿐이다. 나아가 전자어음의 지급제시에 대해 전자어음법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자동지급제시를 인정⁴²⁾하고 있다. 그렇다면

39) 대법원 민사집행규칙 제214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① 예탁유가증권을 가압류하는 때에는 예탁원 또는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한 계좌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 제1항, 제178조, 법 제188조 제2항, 법 제226조, 법 제227조 제2항·제3항, 법 제234조, 법 제235조, 법 제237조 제2항·제3항 및 법 제29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9조 제1항 제1호, 제160조 제1항, 법 제226조, 법 제227조 제2항·제3항 및 법 제237조 제2항·제3항에 '제3채무자' 라고 규정된 것은 '예탁원 또는 예탁자' 로, 법 제296조 제2항에 '채권가압류'라고 규정된 것은 「민사집행규칙」 제214조 제1항의 '가압류'로 본다.

40) 대법원 민사집행규칙 제217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예탁유가증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에는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1) 예탁유가증권 외에 전자단기사채에 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전자단기사채법 취지상의 민사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대법원 민사집행규칙에 별도로 처리절차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다.

42) 만기에 자동지급제시되더라도 해당 전자어음은 정상 결제되지 않고 부도처리된다. 현재 전자어음업무규약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배서·양도를 금지하고 만기에 해당 전자어음을 자동지급제시하더라도 강제집행 제도 취지와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 전자어음법 및 민사집행규칙 개정(안)

전자어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강제집행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어음법에 전자단기사채법 제34조 또는 자본시장법 제317조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대법원 민사집행규칙에 전자어음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민사집행규칙에 신설되어야 할 내용은 ①법원은 전자어음에 대한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 결정시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전자어음의 배서·양도를 금지시켜야 하며, ②압류·가압류 및 가처분 결정된 전자어음의 보존행위(최소 지급제시는 포함할 필요)를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IV. 부도사유 사고신고서접수 관련 개선 방안

1. 개요 및 문제점

가. 의의

전자어음의 사고신고서접수⁴³⁾란 사기나 강박에 의해 전자어음을 발행하였거나 어음수취인의 원인채무 불이행으로 발행인이 지급위탁을 취소한 경우에 적용되는 부도사유⁴⁴⁾이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피사취·계약불이행 등의 항변권을 가지는 고객이 이를 지급은행에 신고⁴⁵⁾하고,

압류, 가압류, 지급정지가처분된 전자어음에 대해서는 부도사유로 '법적지급제한'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가처분의 경우 발행인은 해당 어음금 해당 금액을 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으로 지급은행 별단예금에 입금해야 한다.

43) -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 제67조(부도사유) ① 수표,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을 부도반환할 때 적용할 부도사유는 다음과 같이 한정한다.

1. ~ 4. (생략)

5. 사고신고서접수(분실, 도난, 피사취, 계약불이행)

- 전자어음업무규약시행세칙 제29조(부도사유) 전자어음에 적용할 부도사유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사고신고서접수(계약불이행, 피사취)

44) 어음교환업무규약 해설, 2011, p158 참조. 참고로 약속어음의 경우 분실, 도난, 피사취, 계약불이행 이상 4가지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전자어음의 경우 분실, 도난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피사취와 계약불이행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신고를 접수한 은행들이 고객의 항변권을 대리행사하여 지급을 거절(부도처리)하는 것⁴⁶⁾이다.

주의할 점은 이용고객의 사고신고에 대해 지급은행은 해당 신고의 진실성을 심사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조사할 권한도 없으며, 신속성을 요하는 어음·수표 사무처리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판례도 동일하게 보고 있으며 나아가 ‘은행이 지급위탁 취소사유로 되어 있는 사취 사실이 진실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위탁의 취소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판시⁴⁷⁾하고 있다.

나. 신고권자

전자어음 발행인의 사고신고는 지급위탁 취소에 해당하므로 수임인인 지급은행은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발행인 외 제3자의 사고신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오로지 은행으로 하여금 어음금지급사무를 처리할 때 신중히 해 달라는 주의촉구 의미⁴⁸⁾밖에 없다. 따라서 발행인 외 제3자의 사고신고가 있을 경우 지급은행은 사고신고로 접수는 하지만, 부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어음·수표가 지급제시되기 전까지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지급정지 의뢰를 받아야 한다.

다. 처리절차

약속어음 및 전자어음의 은행 사고신고 처리 실무절차⁴⁹⁾는 아래와 같다.

45) 이용고객의 사고신고의 법률적 성격은 대부분 지급위탁의 취소라고 보고 있다.

46) 은행들은 현재 사고신고를 어음발행인 등이 발행 또는 유통과정에 사고가 있음을 이유로 제시기간 내에 지급은행에 해당 어음금의 지급위탁을 철회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처리하고 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에 따르면 발행인의 계좌에 예금이 있는 한 지급은행은 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할 터인데, 사고신고를 접수하면 해당 어음에 관하여 지급은행은 사고신고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법령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 자치법규인 규약과 세칙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다. 즉 법령이 미처 마련하여 놓지 아니한 것을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은행들이 자치법규를 통하여 마련해 놓은 것이다. : 김교창, 어음교환상의 부도, 사고신고,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실무적 고찰(금융법학), 국민대학교, p224

47) 은행을 지급장소로 한 약속어음에 있어서 피사취계의 제출은 발행인이 은행에 대하여 지급위탁을 취소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이에 따라 은행은 제시된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여야 하고 은행이 그 지급위탁 취소사유로 되어 있는 사취사실이 진실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위탁의 취소를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발행인이 어음이 사취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사취계를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피사취계의 제출로써 은행을 기망하여 어음금 지급에 관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83.10.11 83도 1799

48) 김문재, 어음·수표의 사고신고담보금에 관한 법적 연구, 상사법연구 제16권 제2호(1997), p576 : 同旨 어음교환업무규약해설집 p219

49) 농협중앙회, 예금업무방법서, 당좌예금 사고신고편, p1 : 임주섭, 어음교환규약상 사고신고담보금의 운영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2011 p17에서 재인용. 同 논문은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사고처리 절차를 언급하고 있으나 전자어음도 동일하기에 해당 내용을 인용한다.

① 사고신고서 접수

- 사고신고서 지급제시기간 내라도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 전화 또는 구두로 사고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인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다음 영업일까지 서면으로 사고신고서를 제출하게 한다. 이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서면신고가 없는 경우, 무권리자에게 지급될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

② 사고신고인 또는 발행인으로부터 관련 서류 징구

- 어음·수표 사고신고서. 단 발행인이 사고신고하는 경우는 불필요
- 지급정지의뢰서
(발행인이 작성하며, 제3자 사고신고의 경우 징구치 않으면 부도처리할 수 없음)
- 사고신고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

③ 사고신고담보금⁵⁰⁾ 별단예금 계정 입금

-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체칙 및 전자어음업무규약시행체칙에 따라 사고신고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 체결과 동시에 입금해야 함

라. 문제점

사고신고서접수 및 사고신고담보금 제도는 허위 신고 방지 및 진정한 권리자에 대한 어음금 지급 담보라는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도 자체에 대한 변경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전자어음의 활성화됨에 따라 문제점 및 악용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발행인의 입장에서 사고신고서접수와 관련된 문제점은 착오발행 또는 착오배서의 경우를 들 수 있다.

- 발행인 甲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乙에게 전자어음(3억원)을 발행하려 하였으나 착오로 기존 거래업체인 丙에게 발행
- 통상적인 경우 丙은 甲에게 해당 전자어음을 수령거부 또는 반환해야 하나 丙이 거래정지 처분을 받거나 폐업한 경우로서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 사고신고 및 담보금 입금을 통해 처리

50) 참고로 사고신고담보금이란 전자어음·약속어음·당좌수표 및 가계수표 발행인이 사고신고와 관련하여 지급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입금한 어음금액 해당 자금을 말한다. 어음·수표(단, 자기앞수표는 제외)가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부도처리되면 발행인에게는 거래정지처분, 부도거래처 등록,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채무의 기한이익의 상실, 신규여신 취급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되고, 나아가 수표의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발행인이 이러한 불이익 처분을 모면하기 위하여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사고신고담보금 제도이다. 별단예금으로 입금된 사고신고담보금은 사고신고담보금약정에 규정된 사유(법원의 확정판결 등)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발행인 또는 소지인에게 지급된다.

丙이 해당 전자어음을 만기시까지 배서양도하지 않을 경우 발행인 甲은 해당 전자어음금액을 사고신고담보금으로 거래은행 별단예금에 입금하고 약정서에 따라 법원판결 등을 통해 해당 사고신고담보금을 환수할 수 있다. 하지만 丙이 제3자에게 해당 전자어음을 배서양도하고 - 학설상 논란은 있지만 - 제3자가 해당 전자어음을 선의취득할 경우 제3자는 재판상 선의취득을 주장하여 승소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사고신고담보금은 제3자가 수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상기 사례에서 발행인은 착오발행 또는 착오배서한 전자어음의 유통 - 배서양도 - 을 금지해달라고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재 전자어음법상 사고신고를 이유로 전자어음관리기관이 특정 전자어음의 배서·양도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소지인의 입장에서 사고신고서접수 제도 악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만기가 도달한 전자어음에 대해 변제자력이 있는 발행인 甲이 乙이 소지한 전자어음에 대해 피사취 또는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서접수 부도처리를 요청하고 사고신고담보금을 별단예금에 입금
- 발행인 甲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소지인 乙에게 어음금액 일부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강요
- 소지인 乙은 확정판결을 받기 위한 기간, 비용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 甲에게서 어음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금액을 받고 부도 전자어음을 반환
- 발행인 甲은 부도 전자어음 회수를 근거로 거래은행으로부터 사고신고담보금 수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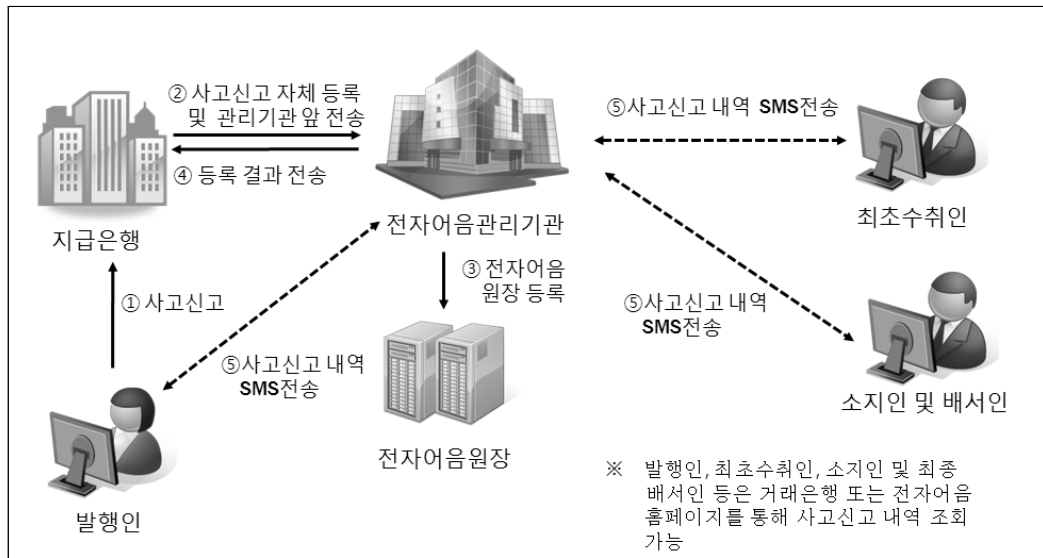
상기와 같은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사고신고 내역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실물약속어음의 경우 실시간으로 사고신고 사실을 등록하거나 사고신고 내역을 조회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전자어음의 경우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참가은행이 접수한 사고신고 내역을 전송받아 전자어음 원장에 해당 내역을 전산등록하고, 등록내역을 관련인들에게 통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사고신고서접수 및 사고신고담보금 제도 자체의 기본 형태는 유지하면서 IT기술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하에서는 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사고신고등록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전자어음 사고신고등록시스템 구축(안)

가. 개 요

전자어음 사고신고등록시스템은 전자어음에 대하여 발행인이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를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전자어음 원장에 등록하고, 전자어음 관련인(발행인, 최초수취인, 현재 소지인 등)에게 통지 및 공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나. 세부 처리 절차



- ① 발행인이 전자어음에 대해 '피사취 또는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를 접수한다.
- ② 사고신고를 접수한 지급은행은 사고신고 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뒤, 해당 내역을 전자어음관리기관(금융결제원)으로 전송한다.
- ③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사고신고내역 관련 정보를 해당 전자어음 원장에 등록한다.
- ④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사고신고 내역 정상등록 여부 등 등록 결과를 참가은행으로 전송한다.
- ⑤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발행인(사고신고인), 최초수취인, 현재 소지인 등 해당 전자어음과 관련한 모든 사람들에게 SMS로 사고신고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전자어음 관련인이 전자어음관리기관 홈페이지 또는 참가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 기대 효과

(1) 실질적 유통 중지 효과

전자어음 원장에 사고신고 내역이 등록되고, 관련인에게 SMS로 통지되며 나아가 전자어음을 양수한 피배서인이 사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해당 전자어음은 더 이상 유통되지 못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최종소지인 입장에서는 사고신고 등록 사실을

알고도 전자어음을 배서양도 받아서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을 이유도 없고, 만기일에 지급제시해도 정상 결제되지 않고 부도처리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고신고 등록 당시의 어음소지인이 해당 전자어음을 배서양도 한다고 해도, 피배서인은 사고신고 등록 사실을 알게되면 수령거부 또는 반환을 할 것이므로 사고신고등록된 전자어음은 실질적으로 유통이 중지될 것이다.

(2) 당사자 및 법률관계의 단순화

이론상으로는 사고신고된 전자어음은 최종적으로 피사취 또는 계약불이행 당사자간의 문제로 단순화된다. 이는 자신의 행위가 아닌 타인의 행위로 어음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하에서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1]

甲은 乙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이후 乙은 丙, 丙은 丁에게 배서양도하였는데 乙의 피사취를 이유로 甲이 사고신고를 한 경우

[사례2]

甲은 乙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이후 乙은 丙, 丙은 丁에게 배서양도하였는데 丙이 乙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하였고, 乙의 부탁을 받은 甲이 사고신고를 한 경우

현재는 사례1과 2에서 최종소지인 丁은 甲의 사고신고 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만기 지급제시 이후에야 사고신고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따라서 만기까지 보유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등록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사례1과 사례2에서 丁은 甲의 사고신고 사실을 SMS 등을 통해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사고신고 사실을 인지한 丁은 당연히 丙에게 해당 전자어음을 수령거부 또는 반환하고 하자없는 새로운 결제수단을 요구할 것이다. 나아가 사례1의 경우 丁에게서 수령거부·반환받은 전자어음을 소지한 丙은 丁과 동일한 이유로 乙에게 수령거부 또는 반환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사례1과 사례2에서 최종소지인은 피사취와 계약불이행의 직접 당사자인 乙과 甲 또는 乙과 丙으로 복귀하게 되고 피사취·계약불이행과 전혀 관련없는 사례1에서의 丙과 丁, 사례2에서 丁은 전자어음 관련 분쟁에서 빠질 수 있게 된다. 한편, 직접 당사자간 문제로 단순화된 이후의 권리관계는 선의취득과 인적항변의 절단 법리에 따라 해결⁵¹⁾될 것이다.

51) 전자어음에 대해 선의취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선의취득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私見으로는

①전자어음법 제14조는 수령거부 또는 반환의 경우 ‘발행되거나 배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라고 규정하고

(3) 부도 발생에 대한 사전 고지 기능

등록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수령거부·반환을 통해 당사자간의 문제로 단순화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가 되겠지만 예외적으로 수령거부·반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지급제시일 당일 발행인이 부도신고를 하는 경우, 수령거부·반환의 상대방인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거래정지처분·폐업 등의 사유로 지급능력이 없기에 대체 결제수단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등록시스템 제도를 통한 사전 고지는 의미가 있다. 지급제시일 당일 발행인이 사고신고를 하는 경우는 향후 소송 과정에서 최종소지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⁵²⁾이고, 이미 지급능력을 잃어버린 경우라면 사고신고된 전자어음 소지인은 만기일에 미지급을 전제로 사전 자금 운용방안을 수립하고 소송 등을 통한 자금회수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라. 검토 및 확인 필요 사항

전자어음에 대한 사고신고 등록시스템의 운영을 위해서는 크게 2가지 법적 문제점을 반드시 검토·확인할 필요가 있다.

(1) 사고신고 등록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어음법과 전자어음법상 사고신고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및 사고신고 주체 문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어음법 제1조와 전자어음법 제6조 제1항은 어음과 전자어음의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그 외의 것은 유익적 기재사항⁵³⁾, 무익적 기재사항⁵⁴⁾ 및 유해적

-
-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바에 따라 단순화될 경우 사례1의 전자어음은 甲에서 乙로, 사례2에서는 甲, 乙, 丙 순으로 된 배서만 있을 뿐이고, ②피사취의 경우 악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례1에서 乙은 보호받지 못한다. 물론 甲은 乙을 대상으로 사고신고담보금 약정서상의 요건에 따라 원칙적으로 어음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통한 확정판결을 받아야 담보금을 수령할 수 있다. ③사례2에서 丙은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있지만, 乙과 丙은 계약불이행의 직접 당사자이므로 乙은 인적항변 사유를 가지고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丙에게 선의취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同 선의취득은 인적항변이 붙은 선의취득이 될 수 밖에 없다.
- 52) 지급제시일까지 발행인이 사고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종소지인은 해당 전자어음에 대한 선의취득과 인적항변 절단에 대한 주장이 훨씬 용이할 것이다. 선의취득의 요건 중 하나인 고의·중과실의 입증책임과 인적항변 절단의 예외 요건 중 하나인 害意는 어음의 반환청구자, 즉 어음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고신고 자체를 만기일에 하게 된 특별한 원인이 없는 한 사고신고가 없는 전자어음을 취득한 채무자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거나 해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 53) 유익적 기재사항이란 어음수표상에 반드시 기재하여야만 어음 수표로서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어음 수표상에 기재하면 기재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을 말한다. 법문상으로는 ‘.....기재할 수 있다’로 표현한다. : 김문재, 전제서, p164 참조
- 54) 무익적 기재사항이란 어음수표상에 이를 기재하여도 어음수표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없고, 어음수표상의 아무런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항을 말한다. 법문상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기재사항⁵⁵⁾으로 분류하고 있다. 생각건대 발행인이 지급은행에 대해 사고신고를 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이 이를 전자어음 원장에 등록하는 것은 무의적 기재사항이라고 본다. 따라서 사고신고 내역을 전자어음 원장에 등록하더라도 전자어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그 자체는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으며 오로지 사실을 공시하는 것 뿐이다. 또한 전자어음의 당사자가 아닌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사고신고 내역을 원장에 등록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전자어음거래약관 및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참가은행 또는 관리기관이 발행인의 위임을 받아 사고신고 내역을 등록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2) 피배서인의 선의취득 관련 사항

사고신고등록제도가 도입될 경우 등록된 사고신고 정보의 조회 또는 인지내역과 선의취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고신고가 등록된 시점 이후의 전자어음 양수인이다. 등록된 시점 이후에 전자어음을 양수하는 경우라면, 해당 양수인은 양수할 당시에 사고신고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현재 양수인은 발행인 또는 배서인으로부터 배서양도를 받은 후에만 전자어음 내역을 조회하여 등록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선의취득 요건 중 하나인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의 판단 시점은 어음취득시점이다. 전자어음의 경우에도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의 판단 시점이 문제가 되는데, 어음취득시부터 인정하는 견해와 양수인이 전자어음 내역을 수신 받고 검색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견해가 있다. 후자의 주요 논거는 아래와 같다.

'전자어음 제도에서는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에 의하여 전자적인 거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에서 볼 때 선의취득의 주관적 요건인 악의·중과실의 유무는 어음취득시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므로, 증권의 점유의 연장선상에서 양수인이 전자어음을 수신받고 검색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보호하여야 한다⁵⁶⁾

私見으로는 전자어음의 선의취득 시점을 일반어음과 달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선의취득요건은 엄격한 법적 요건이고, 전자어음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어음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전자어음 취득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수신 받고 검색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당사자가 수신받고 검색하지 않고 있는 동안은 권리관계가 불확실해진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어음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어음법에 규정은 없어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ex. 대가문구, 통지문구, 제시문구, 상환문구, 어음번호, 위약문구 등) : 김문재, 전게서, p167 참조

55) 유해적 기재사항이란 어음수표상에 이를 기재하면 그 어음수표행위 자체도 무효가 되는 사항을 말한다. 특히 발행에 있어서의 유해적 기재사항은 어음 자체가 무효가 된다. 예를 들면 어음 수표상의 권리를 원인관계와 연계시키거나 지급에 조건을 붙이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 김문재, 전게서, p168 참조

56) 양석완, 전자어음의 배서, 법과정책(2007. 2), p196 참조

타당하며, 동 관점에 볼 때 양수인이 전자어음을 배서양도 받는 시점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선의취득은 성립한다.

IV. 결 론

2014년 9월 기준으로 전자어음은 실물약속어음에 비해 약 2배 이상 발행되었다.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자어음은 실물약속어음 발행금액의 약 26%에 불과⁵⁷⁾하나 이는 상대적으로 고액인 CP(기업어음증권)의 발행이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자어음 이용자 및 이용건수의 양적 팽창은 전자어음법 제정 당시에는 간과하였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발생 가능성을 대폭 증대시켰다. 나아가 이용자 및 이용건수의 양적 팽창이 전자어음법 개정을 통한 발행의무자 제도 도입 및 확대에 근거하고 있기에, '전자어음 이용을 법으로 강제하면서 실물약속어음에 인정되는 제반 제도가 전자어음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모순이며,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자 제도는 결론적으로 이용고객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거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실물약속어음에 적용가능한 제도는 전자어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제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전제하에 크게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전자어음 공정증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전자어음 서면전환(증명서 방식)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전자어음 서면전환(증명서 방식)은 전자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 뿐만 아니라 실물약속어음을 전제로 한 기타 제도를 전자어음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57) 전자어음과 실물약속어음 이용 현황 비교

(단위 : 건, 억원)

	실물약속어음		전자어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2년	1,900,019	20,689,100	1,493,602	1,322,439
2013년	1,574,138	17,642,157	1,481,138	3,011,389
2014. 1	74,732	1,292,735	129,048	142,431
2014. 2	157,290	1,142,738	115,170	348,926
2014. 3	120,404	1,115,154	119,404	186,334
2014. 4	118,841	1,170,926	156,260	190,506
2014. 5	73,619	1,014,222	160,694	199,317
2014. 6	139,570	1,024,958	175,985	725,369
2014. 7	90,355	1,083,687	176,941	258,566
2014. 8	46,008	930,739	157,937	856,740
2014. 9	86,261	916,716	179,678	243,157

※ 종이어음은 지급제시 건수, 전자어음은 발행 건수

두 번째로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전자어음 제도의 특성을 감안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동 법령 개정예 반영해야 할 사안은 ①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 결정시 법원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전자어음의 배서 양도를 금지해야 하며, ②전자어음 보존행위 - 전체 보존행위의 수행주체로서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전자어음법상 인정되는 자동지급제시 제도를 감안하여 최소한 해당 전자어음 지급제시만이라도 - 의 주체를 집행관이 아니라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전자어음부도신고 제도 개선 관련하여 IT기반이라는 전자어음의 장점을 활용한 사고신고등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로 전자어음관리기관은 2015년에 법률자문 등 제반 문제점 검토 및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동 제도 구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 대한공증인협회, 공증실무, 2013,
- 김교창, 어음교환상의 부도, 사고신고,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실무적 고찰(금융법학), 국민대학교, 2007
- _____, 어음교환규약상의 사고신고, 사고신고담보금, 상사법연구, 2009
- _____, 어음항변과 어음교환규약상의 사고신고, 저스티스, 2005
- 김문재, 어음·수표법[이론과 실무], 동방문화사, 2013
- _____, 어음·수표의 사고신고담보금에 관한 법적 연구, 상사법연구, 1997
- 박길현, 공증제도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강릉원주대학교 박사논문, 2013
-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13
- 오상현, 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 저스티스 제97호, 2007
- 어음교환업무규약 해설, 금융결제원, 2011
- 임주섭, 어음교환규약상 사고신고담보금의 운영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2011
- 전병서, 전자공증제도의 현황과 과제, 민사소송(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제17권 제2호(2013년 11월)
- 전자어음업무규약해설, 금융결제원, 2012
- 허항진, 전자단기사채제도의 이해 : 단기금융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학술정보, 2011
- 최준선, 어음수표법, 삼영사, 2013
- 양석완, 전자어음의 배서, 법과 정책(2007),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참조 판례

- 대법원 1976.3.23, 76다198
- 대법원 2002.6.25, 2002다13720
- 대법원 1983.10.11, 83도 1799

※ 참조 홈페이지

- www.ksd.or.kr
- www.eblkorea.or.kr

